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박찬원 의원)

의안 번호	275
----------	-----

<sup>27</sup>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13일

발 의 자: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이주용, 심현정, 이명순의원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의무에 근거하며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헌혈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헌혈장소 설치지원 및 헌혈 권장활동 홍보관련(안 제5조~6조)
- 라.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마. 헌혈 권장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0. 09. 21. ~ 2020. 10. 11.(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0. 08. 31. ~ 2020. 09. 07., 제출된 의견 없음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군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혈액관리법

-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 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
연락처	(033) 330 -2502